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3. 제안이유**

-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

**4. 주요골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함.(제7조)
-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중 주택건설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경우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대물변제 받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면제되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함.(제12조의2)

-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중 기존 시장에 입점한 상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시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5년전부터 입점해야 면제가 되던 것을  
  
⇒ 시장 재개발후의 분양을 촉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점시기를 3년전으로 완화함 (제16조제2호)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1호)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1항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 5. 검토의견

###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무료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하도급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대상에

전기공사업자 및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기간을 입점시기 3년 전으로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동조례 제17조 제1항제1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나, 동조 제1호에는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으로만 명시되어 수산가공품 생산업자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동법 제2조(정의) 제4호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합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산가공품의 생산 “가공업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7.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6조 (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제1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 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3.2 대통령령 제17528호]

제26조 (등록 및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 수산물가공업(제3호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등록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어유(간유)가공업 :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 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피혁가공업 :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2. 해조류가공업 :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